##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163

발의연월일: 2023. 2. 22.

발 의 자:신현영·김병기·김정호

김상희 · 김병욱 · 강득구

박재호 · 정일영 · 임종성

정필모 · 김주영 · 김승원

강민정 • 유정주 • 한준호

홍기원 · 허 영 · 송갑석

이원택 · 김병주 · 허종식

김회재 · 윤건영 · 신정훈

김민철 • 최기상 • 김윤덕

의원(2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설치기준 등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식,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의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나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지침을 통하여 정하고있음. 이로 인하여 보육 정책 수행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제도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2조제1항·제2항).

법률 제 호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차의 방식으로 국 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설치기준 및"을 "설치기준,"으로, "배치기준"을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기준"을 "설치 및 운영기준"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 등) ① (생 략)  | 등) ①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       |
|   | 부채납 또는 무상임차의 방식       |
|   | 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       |
|   | 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
|   | 전환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underline{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underline{\mathbf{M1}}$ | ③                     |
| <u>항</u>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 <u>항 또는 제2항</u>       |
|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                                      |                       |
| 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                       |
| 를 거쳐야 한다.   |                       |
| <u>③</u> (생 략)  |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
|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                                      | <u>⑤</u> 제4항          |
| 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                       |
|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                                       |                       |
| 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                       |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
|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                                      | 등의 어린이집) ①            |
|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                       |
| 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  |                       |
| 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                                       |                       |

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u>배치기</u> 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 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 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u>설치기준,</u>      |
|-------------------|
| <u>배치기</u>        |
| 준 및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
|                   |
|                   |
|                   |
|                   |
| <u>.</u>          |
| ②                 |
|                   |
| <u>설치 및 운영기준</u>  |
|                   |
|                   |